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징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을 위한 경감대상 직종 및 경감 방법 등 기준을 마련하며,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하 ‘무급가족종사자’라 함)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하는 법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료제공 요청 대상 추가(안 제54조의2 제19의10 신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 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소프트웨어기술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대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에 관한 특례(안 제56조의8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경감대상 직종과 경감액, 경감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

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무급가족종사자 정보처리 규정 명시(안 제56조의10 제18호)

중·소기업 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정보처리를 위해 현행 법령상 “중·소기업 사업주”를 “중·소기업 사업주 등”으로 용어를 정비함.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기타 사유 명시(안 제56조의10 제20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가 제한됨에 따라 현행 법령상 “적용제외 또는 재적용 신청”을 “적용제외 신청, 적용제외 사유 소멸 신고”로 용어를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3. 23. ~ 5.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 19의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10.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소프트웨어
기술자에 관한 자료

제5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8(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경감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9조의3제5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시행령제125조에서 정한 직종 중 재해율(재해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재해율을 사용한다)이 전체 업종 평균 재해율의 100분의 50 이상인
직종으로 하되 보험료 부담, 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49조의3제5항에 따른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경감비율은 산재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그 밖에 법 제49조의3제5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의 경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의10 제18호 중 “사업주”를 “사업주 등”으로, 같은조 제20호 중 “적용 제외 또는 재적용 신청”을 “적용 제외 신청, 적용제외 사유 소멸신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54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 ----- -----.
1. ~ 19의9. (생략)	1. ~ 19의9.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9의10.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소프트웨어 기술자에 관한 자료</u>
20. (생략)	20.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56조의8(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경감에 관한 특례)</u> ① 법 제49조의3제5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25조에서 정한 직종 중 재해율 (재해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재해율을 사용한다)이 전체 업종 평균 재해율의 100분의 50 이상인 직종으로 하되 보험료 부담, 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49조의3제5항에 따른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u>의 산재보험료 경감비율은 산재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③ <u>그 밖에 법 제49조의3제5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의 경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u>제56조의10(고유식별정보의 처리)</u> (생략) 18.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u>사업주</u> 산재보험 가입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무 20. 법 제49조의3제5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u>적용 제외 또는 재적용 신청</u> 및 산재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무	<u>제56조의10(고유식별정보의 처리)</u> (현행과 같음) 18. ----- ----- <u>사업주 등</u> ----- ----- ----- ----- 20. ----- ----- ----- <u>적용 제외 신청, 적용 제외 사유 소멸신고</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705